

희망키움통장 I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기초수급자 등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본인저축액에 장려금 매칭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2,362,500천원	(국비)1,572,000천원	(사비)790,5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자활지원과	김병기 2133-7480	박용숙 2133-7495	김호정 2133-7497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1,986,171) 2,959,650	(x1,572,000) 2,362,500	(x△414,171) △597,150	(x△20) △20
자치단체경상보조 금	(x1,986,171) 2,959,650	(x1,572,000) 2,362,500	(x△414,171) △597,150	(x△20) △2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희망키움통장(근로소득장려금) 사업비 2,362,500,000원	= 2,362,5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의 저축액에 따라 일정액의 장려금 지원

□ 사업근거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(자산형성지원)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
- 희망·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
□ 사업내용

- 수행기관 : 25개 자치구
- 지원대상
 - 희망키움통장 I :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생계, 의료수급 가구
- 지원내용 :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저축 및 근로소득장려금추가 매칭 지원
- 사업기간 : 연중 상시
- 소요예산 : 2,362,500천원
 - 희망키움통장 I : 국비 59%, 시비 29%, 구비 12%

□ 추진경위

- 2010. :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시행
- 2010.6. :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배치(17개 지역자활센터 17명)
- 2014.7. :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II 사업시행
- 2015.7.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‘가입대상’ 변경 (기존 ‘최저생계비 기준’ ⇒ 변경 ‘중위소득 기준’)

□ 2019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,362,500	
가입자 모집	2019.01~2019.12		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함
자립역량강화교육	2019.01~2019.12		자치구별로 실시

사업비 교부 및 집행	2019.01~2019.12	2,362,500	월별 신청 및 교부
사업비 정산 및 반납	2019.12~2019.12		사업비 정산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○ 희망키움통장 I 428가구 신규 지원
2017년도	○ 희망키움통장 I 564가구 신규 지원
2018년도	○ 희망키움통장 I 247가구 신규 지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유도 및 자립지원 활성화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3,483,495) 5,351,823	(x-) 0	(x-) 441,607	(x3,483,495) 5,793,430	(x3,447,524) 5,729,735	(x-) 0	(x35,971) 63,695
2016	(x6,708,000) 12,189,333	(x-) 0	(x-) 0	(x6,708,000) 12,189,333	(x4,360,664) 7,494,661	(x-) 0	(x2,347,336) 4,694,672
2017	(x7,817,841) 12,343,656	(x-) 0	(x-) 397,471	(x7,817,841) 12,741,127	(x6,368,132) 11,256,863	(x-) 0	(x1,449,709) 1,484,264